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19
----------	-----

제출년월일 : 2014. 6.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평창군내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 신고
-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등

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설치 및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초소 수리비 등
- 체육대회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등

다.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 대하여 평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관계부서승인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14. 4. 28 ~ 5.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및 선도활동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평창
군에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읍·면에서 방범의식 및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
원으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
무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연합대와 연합대에 소속되어 활동
하는 방범대에 적용한다.

제4조(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과 기능) 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
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며, 방범대와 협력체계
를 구축한다.

② 연합대는 방법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방법활동을 지원한다.

③ 연합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법대의 보조사업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보조금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자율방법대의 조직 및 구성) 방법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 등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6조(임무) 방법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재해, 재난 발생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범위) 읍·면 자율방법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읍·면·지구단위 관할 지역으로 한다.

제8조(지원 등) ① 군수는 방법대의 원활한 자율방법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법 활동을 위한 초소 설치 및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 구입비, 초소 수리비 등
2. 방법용 순찰차량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체육대회 등 방법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방법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법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할 경우

4. 방법대의 활동 중 방법대 또는 방법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방법대는 군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방법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법대 및 모범대원에게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및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방범대 운영비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조례제정 전에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왔으며, 기존 지원 경비 외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일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연락처	(033) 330 -2210

관계법령 발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